

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[별표 2의2] <개정 2024. 12. 30.>

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(제3조의2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지역    | 나 지역    | 다 지역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<br>험지지수의 합산점수 | 570점 이상 | 460점 이상 | 390점 이상 |

비고

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, 공관환경지수 또는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에 반영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관의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공관의 지역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